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객자동차
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 인

여수시 조례 제2055호

붙임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」 제3조” 를 “「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” 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내버스운송사업” 을 “시내버스운송사업, 농어촌버스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사업

10.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

제5조제2항 중 “「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7조” 를 “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” 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」” 를 “「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2항의 규정과 「<u>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</u>」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란 <u> 시내버스운송사업, 일반택시운송사업, 개인택시운송사업</u>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지원 대상사업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<u>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시내버스운송사업, 농어촌버스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</u>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원 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u>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공적부담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0. (생략)</p> <p>제5조(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「<u>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</u>」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0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</u>」 및 「<u>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를 준용한다.</p>	<p>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</u></p> <p>10. <u>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제5조(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</u>」 제6조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「<u>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----- -----.</p>